

#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(신규) 동의안

의안 번호	553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10.
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대구도시공사에서 수성의료지구 개발이익 재투자사업으로 추진한 '수성의료지구 스마트시티 1단계 구축사업'의 준공 및 하자보수기간 만료에 따른 시설물 이관시기가 도래함으로써,
- 나. 이관 받은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지역기업 기술개발 테스트베드의 활성화 및 고도화를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관리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   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   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   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  
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)
   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의5  
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    -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 
(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 등)

-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 (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 등)
  -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
  -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위탁사무 기준)
  - 「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」 제5조 (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 등)
-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-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개발자 플랫폼의 고도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첨단ICT융합기술 및 데이터 활용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.
  - 현재 통합플랫폼은 개별 서비스 제공용으로는 충분하나,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지원용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이 필요함.
  - 기업의 데이터 활용 지원, 서비스 고도화 및 도시전역 확산, 신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플랫폼 고도화를 위해 대구시 스마트 시티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음.

다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- 센터의 관리·운영, 연간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- 통합플랫폼 관리운영(고도화를 위한 신규개발 포함)
- 자가통신망 및 전기시설 등 기본인프라 시설 관리운영
- 8개 스마트도시서비스 시설(HW, SW) 운영 및 유지보수
- 시설 견학을 위한 방문객 안내 및 홍보(마케팅)
- 지역기업 제품개발 및 테스트를 위한 기업지원
- 기타 공공요금 납부, 라이선스 관리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수성의료지구 내(수성구 대흥동 일원)
- 규모 : 979천㎡ / 자가통신망 19.7km, 전기 9.4km, 자율주행 6.5km
- 통합운영센터 : 132㎡(전실, 관람실, 관제실, 서버실 / SWCC 1층)

○ 위치도

사업 위치도



건물(SWCC) 외부전경



통합운영센터 내부전경



마. 민간위탁기간 : 2020. 1. 1. ~ 2021. 12. 31.(2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수의계약(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)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취득가격	관비적용	금 액	비 고
시설물 유지보수비	337,500	8%	27,000	
하드웨어 유지관리비	525,000	8%	42,000	
기술지원비	1,833,340	12%	220,000	
응용SW 유지관리비	2,800,000	10%	280,000	
자율주행시스템 유지관리비	2,500,000	10%	250,000	미래형자동차과 예산 활용
라이선스	546,160	13%	71,000	기존 시스템 상당 부분 운영 가정으로 산정
공공요금		년간	110,000	대구도시공사 실제운영 기준
인 건 비 (책임급 1, 선임급 1, 연구원급 2)		년간	250,000	기관부담금 포함
플랫폼 고도화	4,550,180	1식	300,000	기존 플랫폼 고도화 및 SW개선, 기업 테스트지원비 포함
합 계			1,550,000	

아.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

- 일시/장소 : 2019. 9. 24.(화) 16:00 / 시청본관 영상회의실(2층)
- 참석위원 : 장진형 위원장 외 5명
- 심의결과 : 적정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[붙임 1]

나. 민간위탁 추진계획 : [붙임 2]

**붙임1****관계법령****□ 지방자치법**

**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**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**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**

**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**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**

**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**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**제19조의5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**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
1.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
2.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 정도,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
3.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

□ **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**

**제19조(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 등)**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□ **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**

**제22조(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 등)**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
2.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
3.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2조제4호의 정보통신공사업자
4.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자

## 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**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**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,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□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**제4조(위탁사무 기준)**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**제11조(시의회 동의 및 보고)**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라 시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, 안건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민간위탁동의안을 따른다.

② 시장은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## □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

제5조(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 등)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별 정보시스템을 연계·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운영센터(이하 “운영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운영센터는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하고 관리·운영이 용이하도록 구축하되,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·호환성·안전성·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·운영
2. 스마트도시 관련 정보수집·가공처리·서비스 제공 등
3. 운영센터의 정보통신 장비·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의 관리·운영
4. 운영센터·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
5. 그 밖에 스마트도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·장비의 관리·운영

④ 시장은 운영센터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두거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,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⑥ 제4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·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「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붙임2**

**민간위탁 추진계획**

**수성의료지구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**

수성의료지구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운영 함으로써 선도적 스마트도시 구현 및 지역기업 테스트베드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**I 추진근거**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의5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-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(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 등)
-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
-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)
- 「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22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「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」 제5조(스마트도시기반 시설의 관리·운영 등)
- 스마트시티지원센터 설립·운영계획(스마트시티조성과-4562, '18. 8. 24.)
- 수성의료지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계획(스마트시티과5853, '19. 9. 30.)

## II 목적 및 필요성

-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개발자 플랫폼의 고도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첨단ICT융합기술 및 데이터 활용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
- 현재 통합플랫폼은 개별 서비스 제공용으로는 충분하나,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지원용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
- 기업의 데이터 활용 지원, 서비스 고도화 및 도시전역 확산, 신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플랫폼 고도화를 위해 대구시 스마트 시티를 총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

## III 세부추진계획

### 1 시설현황

- 위 치 : 수성의료지구 내(수성구 대흥동 일원)
- 규 모 : 979천m<sup>2</sup>/자가통신망 19.7km, 전기 9.4km, 자율주행 6.5km  
※ 통합운영센터 : 132m<sup>2</sup>(전실, 관람실, 관제실, 서버실 / SWCC 1층)
- 주요시설 : 통합플랫폼, 전기통신 인프라, 8개 스마트도시서비스시설  
※ 통합운영센터 시설 및 장비현황 : [붙임 1] 참조

### 2 위탁개요

- 위탁기간 : 2020. 1. 1. ~ 2021. 12. 31.(2년)
- 위탁범위 :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관리운영 및 사업 일체  
※ 스마트비즈니스센터 건립 후('21. 8월) 별도 계획수립 예정

### 3 수탁기관 선정

- 선정방법 : 수의계약(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)
- 법적근거
 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의5  
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  -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」  
(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 등)
- 선정기준
  - 수탁기관의 전문인력 및 조직 보유현황
  -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및 전문성
  -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
  - 대구시 스마트도시 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확장가능성 등
- 자격대상
  -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  
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
  - 플랫폼 개발 및 운영, 첨단정보통신기술 기반 시설물 관리운영  
사업에 풍부한 경험이 있고 대구시 스마트시티 조성 및 산업육성  
취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춘 기관
- 대상기관 :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(스마트도시지원센터)

**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제2항**

**□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위탁관리 가능 기관**

1.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
2.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
3.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2조제4호의 정보통신공사업자
4.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자

#### 4 위탁 사무내용

- 센터의 관리·운영, 연간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- 통합플랫폼 관리운영(고도화를 위한 신규개발 포함)
- 자가통신망 및 전기시설 등 기본인프라 시설 관리운영
- 8개 스마트도시서비스 시설(HW, SW) 운영 및 유지보수  
(스마트가로등 CCTV 외 2종 관제업무 제외)
- 시설 견학을 위한 방문객 안내 및 홍보, 마케팅
- 지역기업 제품개발 또는 테스트를 위한 기업지원
- 기타 공공요금 납부, 라이선스 관리 등

#### 5 운영위탁비 산정

- 2020년도 예산편성 : 1,550백만원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취득가격	관비적용	금 액	비 고
시설물 유지보수비	337,500	8%	27,000	
하드웨어 유지관리비	525,000	8%	42,000	
기술지원비	1,833,340	12%	220,000	
응용SW 유지관리비	2,800,000	10%	280,000	
자율주행시스템 유지관리비	2,500,000	10%	250,000	미래형자동차과 예산 활용
라이선스	546,160	13%	71,000	기존 시스템 상당부분 운영을 가정으로 산정
공공요금		년간	110,000	도시공사 실제 운영비 기준
인 건 비		년간	250,000	기관부담금 포함 (책임급 1명, 선임급 1명, 연구원급 2명)
플랫폼 고도화	4,550,180	1식	300,000	기존 플랫폼 고도화 및 SW개선 기업 테스트지원비 포함
<b>합 계</b>			<b>1,550,000</b>	

## IV 향후계획

- 민간위탁동의안 시의회 심의·의결 : '19. 10월
- 일상감사 의뢰 : '19. 10월
-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: '19. 11월
- 위·수탁 계약체결 및 공증 : '19. 11월
- 시설물 인계인수 및 공동운영 : '19. 11월 ~ 12월
- 통합운영센터 관리운영 : '20. 1월

## V 기대효과

-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통합 관리운영으로 효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, 민간의 전문 운영기술 도입을 통해 향후 스마트도시 확산에 따른 추가 서비스 도입 및 서비스 질 향상
- 주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별 정보수집과 수집된 정보를 활용한 통합솔루션 개발로 도시의 지속 발전 추진

## VI 첨부서류

-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시설(장비) 현황 : [붙임 1]
- 관련법규 발췌 : [붙임 2]

<b>붙임1</b>	<b>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시설(장비) 현황</b>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구 분	서 비 스 명	개 소	설 치 내 용	비 고
플 랫 폼	플랫폼 및 인프라	1	도시플랫폼, ICT장비 110여대, 응용SW, 상용SW, DID2×4	
인 프 라	통신국사, 자가통신망	1	통신국사, ICT장비 28대, 광통신선로(48코어) 2링, 현장 산업용스위치 73대 등	
생 활	스마트 미디어월	1	15m×3m LED강화유리, 인체감지센서 시설관리CCTV 1대	
	디지털 사이니지	10	2.5m×0.9m, 55인치 10대	
	스마트 워킹	1	전용앱, 비콘 41개	
도시관리	지하매설물관리 (가스 전기 통신 오수 상수 등)	1	전용앱·웹, SPI태그 1,480개	
안 전	스마트가로등CCTV(60CH)	18	CCTV+비상벨+WiFi 5대, CCTV+비상벨 12대, WiFi 1대	시설관리는 스마트시티과 관제업무는 수성구 안전총괄과 담당
	생활안전CCTV(33CH)	11	스피드돔 11대, 검지카메라 22대, 비상벨 11대 ※ 예비품 1식 별도(스피드돔 1대, 검지카메라 2대, 비상벨 1대)	
교 통	주정차무인관제	6	지자기센서 108개, 태양전지 12대, LED알림판 24개	
자율주행	자율주행	1	RSU, OBU, 서버, 관제센터 등 실증기반(6.5km)	

**붙임2**

**관련법규**

□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**제19조의5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**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
1.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
2.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 정도,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
3.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

#### □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

**제19조(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 등)**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#### □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**제22조(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 등)**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
2.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
3.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2조제4호의 정보통신공사업자
4.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자

## 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**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**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,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□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**제4조(위탁사무 기준)**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**제11조(시의회 동의 및 보고)**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라 시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, 안건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민간위탁동의안을 따른다.

② 시장은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## □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

제5조(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 등)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별 정보시스템을 연계·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운영센터(이하 “운영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운영센터는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하고 관리·운영이 용이하도록 구축하되,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·호환성·안전성·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·운영
2. 스마트도시 관련 정보수집·가공처리·서비스 제공 등
3. 운영센터의 정보통신 장비·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의 관리·운영
4. 운영센터·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
5. 그 밖에 스마트도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·장비의 관리·운영

④ 시장은 운영센터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두거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,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⑥ 제4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·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「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